

제215회 거창군의회

<임 시 회>

# 조 례 안 상 정

(조례 7건)

거 창 군

--- 목 차 ---

의안번호	건 명	쪽수
2016-2	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2016-3	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2016-4	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1
2016-5	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3
2016-6	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9
2016-7	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3
2016-8	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	45

##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2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1. 08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○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확대·신설된 사업소의 장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위원 구성 시 당연직위원 확대(안 제2조)

○ (현행)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, 보건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  
⇒(변경) 본청 실·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

#### 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용어 순화함

○ 기타 ⇒ 그 밖의, 자 ⇒ 사람, 인 ⇒ 명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#### 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'15. 12. 11. ~ 12. 31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 : 반영함(제2조제4항 후단)

##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거창군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“각1인”을 “각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, 보건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”을 “본청 실·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10인”을 “1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 제목 “(결정사항)”을 “(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사항을 결정한다.”를 “각 호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·의결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본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(중전 제11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(중전 제10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 등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

제4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

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삭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단장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하”를 “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”로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“군정조정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2항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7조의 규정을”을 “제7조를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(이하 "결정"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, 보건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u></p> <p>④ <u>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. &lt;신 설&gt;</u></p> <p>⑤ <u>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조(구성) ① <u>거창군정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-----각 1명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---본청 실·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10명-----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위촉위원-----</u></p> <p>-----</p>
<p>제3조(결정사항) <u>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</u>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다른 조례, 규칙, 규정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</u></p> <p>8. <u>보안업무시행요강제4조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</u></p>	<p>제3조(기능) -----<u>각 호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-----<u>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전원 위촉직으로 하되, 부문별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군정조정위원회</u>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</p> <p>6. <u>기타</u>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</p> <p>⑤ ~ ⑥ (생 략)</p> <p><b>제7조의2(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)</b> ① (생 략)</p> <p>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<u>2인</u>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<u>제7조의 규정을</u> 준용한다.</p> <p><b>제8조(실비변상)</b>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자문단원,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안에서</u>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<u>기타</u>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사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6. <u>그 밖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7조의2(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<u>2명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-----<u>제7조를</u></p> <p>-----</p> <p><b>제8조(실비변상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범위에서</u>-----</p> <p>-----<u>그 밖의</u></p> <p>-----</p>

##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3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1. 08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○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른 본청과 사업소 정원을 변경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

○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조정

- 현행 : 598명(본청276명, 의회11명, 직속기관94명, 사업소45명, 읍36명, 면136명)
- 조정 : 598명(본청278명, 의회11명, 직속기관94명, 사업소43명, 읍36명, 면136명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, 제24조,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#### 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 - (가) 예고기간 : '15. 11. 30. ~ 12. 20.
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(6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
					소계	농업 기술센터	보건소			
총	계	670	295 293	14	128	65	63	49 51	37	147
정무직		1	1							
일반직	소계	637	292 290	14	100	37	63	47 49	37	147
	4급	1	1							
	4~5급	3	2		1		1			
	5급	35	11	3	5	4	1	4	1	11
	6급 이하	598	278 276	11	94	33	61	43 45	36	136
별정직 (6급 상당 이하)		1	1							
연구직 (연구사)		6	1		3	3		2		
지도직 (지도사)		25			25	25				



##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4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1. 08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「주민투표법」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‘주민등록번호’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‘생년월일’로 변경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조항 변경함(안 제4조)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 ⇒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2항

나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용 반영

○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⇒ 생년월일  
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○ 주민등록번호 ⇒ 생년월일(별지 제3호서식)

○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작성요령 “주민등록번호란 설명” 삭제함  
(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)

다.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(안 제14조)

○ 자 ⇒ 사람

라. 지번 요구 사항을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함(별지 제5호서식)

○ 지번 ⇒ 도로명과 건물번호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2항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, 「주민투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‘15. 11. 20. ~ 12. 10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·제9조 중 “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”을 “생년월일을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하고,  
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본문, 같은 항 제3호·제4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·분합</p> <p>3. ~ 6. (생략)</p>	<p>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2항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· <u>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</u>·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 ① ----- ----- -----<u>생년월일</u>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청구인서명부의 제출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·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· <u>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</u>, 청구의 대상 및 취지,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청구인서명부의 제출) ----- ----- -----<u>생년월일</u>----- -----</p>
<p>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 ① (생략)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 <u>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</u>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생년월일을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심의회)의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는 군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<u>자로</u>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변호사, 대학교수,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<u>자</u></p> <p>4.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<u>자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8조(수당 등)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심의회)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사람으로</u>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<u>사람</u>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<u>사람</u>----- 4. ----- -----<u>사람</u>-----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수당 등) ----- ----- -----<u>범위에서</u>----- -----</p>



[별지 제2호서식]

청구인대표자증명서		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(전화번호 : )		
주민투표 청구요지			
서명요청기간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5px;">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</div> ※ 제외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: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사람은 「주민투표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거    창    군    수    (인)</p>			
<p>※ 작성요령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. 다만,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</li> <li>2. 주민등록번호란에 <del>국내거소신고</del> <del>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,</del> 외국인의 경우에는 <del>외국인등록번호를</del> 기재</li> <li>2. 주소란에 <del>국내거소신고</del> <del>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,</del> 외국인의 경우에는 <del>체류지를</del> 기재</li> <li>3.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</li> </ol>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				
주민투표 청구요지				
청구인 대표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 : )		
수임자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<u>생년월일</u>	
	주소	(전화번호 : )		
	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
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<u>생년월일</u>	
	주소	(전화번호 : )		
	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
<p>「주민투표법」 제10조제3항과 「거창군 주민투표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청구인대표자 (서명 또는 날인)</p>				
<b>거창군수 귀하</b>				
<p><b>※ 작성요령</b></p> <p>1.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</p> <p>2.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. 다만,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</p> <p>3. 주민등록번호란에 <del>국내거소신고</del> <del>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,</del> <del>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</del> 기재</p> <p>3. 주소란에 <del>국내거소신고</del> <del>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,</del> <del>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</del> 기재</p> <p>4.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, 별지로 작성</p>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				
주민투표 청구요지				
청구인 대표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 : )		
수임자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 : )		
	기간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
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 : )		
	기간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
<p>「주민투표법」 제10조제3항과 「거창군 주민투표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,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거창군수(인)</p>				
<p><b>※ 작성요령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</li> <li>2.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. 다만,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</li> <li>3.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</li> <li>3.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,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</li> <li>4.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, 별지로 작성</li> </ol>				



## 청 구 인 서 명 부

번호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서 명 또는 날 인	서명일자	비 고

**※ 작성요령**

1.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
2.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,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
- ~~3.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~~
- 3.**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,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. 다만,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,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
- 4.**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
- 5.**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,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,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





##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5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1. 08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○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○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·제2조, 별지 제1호·제7호서식)  
 -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 ⇒ 제16조의4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,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#### 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'15.12.07. ~ 12.27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·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</u>」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</u>」 제16조의4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(<u>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</u>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2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[별지 제1호서식]

## 금연지도원 신청서

신청인	성명 (한자)		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	성별		
	주소(전화번호)				

자격요건 및 신청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
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「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(서명 )

거창군수 귀하

첨부물	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 2.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,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
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뒷쪽란 생략)

[별지 제7호서식]

<b>단독 직무수행 승인서</b>				
금연 지도원	① 소속(단체명)		② 성 명	④ 전화번호
	③ 생년월일		④ 전화번호	
	⑤ 주 소			
⑥ 출입 기간		년 월 일 부터      년 월 일 까지		
⑦ 출입 장소				
⑧ 직무수행범위				
<p>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<b>제16조의4</b>제6항 및 「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거창군수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2px 5px;">직인</span></p>				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##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6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1. 08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○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·재해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안전도시사업 중 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5조제7호)

○ 세계보건기구(WHO) 안전도시 인증 공인 기간 만료('15. 3월)

나.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함(안 제5조의2)

○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'16년도 예산 25,000천원 확보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'15. 12. 23. ~ '16. 1. 12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없음

##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5조의2(군민안전보험)**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 보험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이름, 보상범위, 보상 한도액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업의 범위)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</li> <li>4.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</li> <li>5.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권장하는 <u>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8.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사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-----</li> <li>2.-----</li> <li>3.-----</li> <li>4.-----</li> <li>5.-----</li> <li>6.-----</li> </ol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7.-----</li> </ol> <p><u>제5조의2(군민안전보험) ①</u>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군민안전보험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</u>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이름, 보상범위,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<u>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

#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### ○ 제5조의2(군민안전보험)제1항

: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### ○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,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

## 4. 작성자

안전총괄과장 김 정 욱

##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7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1. 08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○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하며, 요금 납부방법 개선, 체납 시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 등 군민 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(안 별표 2, 별표 4)

- 업종별 사용료 20.9%, 구경별 기본요금 15.2% 인상률 반영
-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(안 별표 7 신설)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1 ~ 3급)
 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

#### 나.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(안 제32조의2)

- 요금,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신설

#### 다.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(안 제34조)

- (현행) 체납액의 3%, 월할계산 ⇒ (변경) 2%, 일할계산

#### 라. 규제 삭제함

-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서 조항 삭제(안 제11조제1항제1호)
- 법령위임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(안 제45조, 별표 5)
  - 부정급수 제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 포상금 지급 조항 삭제(안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)
  -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준용 내용 삭제(안 제49조제1항 단서)
  - 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조항에서 “과태료” 용어 삭제(안 제50조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수도법」 제38조(공급규정)
- 「수도법」 제72조(수도요금 등의 납부)
- 「수도법」 제87조(과태료)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53조의2(수도요금 감면)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- 「표준급수조례」 제11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
- 「표준급수조례」 제29조(가산금 및 독촉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
나. 예산조치 : '16년도 예산 7,746천원 확보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#### 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(2) 규제심사 : 규제개선
- (3) 입법예고
  - (가) 예고기간 : '15. 12. 10. ~ 12. 31.
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- (5) 성별영향분석 : 반영함(별지 제1호서식 성별 추가함)

##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,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34조 중 “100분의 3”을 “100분의 2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. (가산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 12개월 × 연체일수/365)

제37조 제목 “(요금 등의 감면)”을 “(요금의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

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.

⑥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.

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3조(포상금 지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: 1건당 20만원
2.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: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

제45조를 삭제한다.

제4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0조 중 “수수료, 과태료”를 “수수료”로 한다.

별표 5를 삭제하고, 별표 2와 별표 4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요금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“<u>공업용수</u>”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.</p> <p>10. ~ 11. (생략)</p> <p>제11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(다만,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)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<u>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 시설의 확장·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 <p>제34조(가산금) 상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 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<u>100분의 3</u>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10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&lt;단서 삭제&gt;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,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p> <p>제34조(가산금)----- ----- ----- -----100분의 2----- -----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. (가산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 12개월 × 연체일수/365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: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면</p> <p>2.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: 수도요금 100퍼센트 감면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제37조(요금의 감면)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⑥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3조(포상금 지급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: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</p> <p>2.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: 1건당 20만원</p> <p>3.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: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</p> <p>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</p>	<p>제43조(포상금 지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: 1건당 20만원</p> <p>2.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: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</p>
<p>제45조(과태료 등)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49조(이의신청) ① 상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<b>다만,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</b></p>	<p>제49조(이의신청) ①----- ----- ----- -----&lt;단서 삭제&gt;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0조(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) 이 조례에 따른 요금, 가산금, <u>수수료</u>, <u>과태료</u>,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p>	<p>제50조(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) --- -----<u>수수료</u>----- ----- -----</p>

[별표 2]

업종별 요금표(제27조 관련)

업종구분	사용단계별 (세제곱미터)	세제곱미터당 단 가(원)	현 행
가정용	1 ~ 20	700	530
	21 ~ 30	920	700
	31이상	1,210	920
일반용	1 ~ 30	800	665
	31 ~ 50	960	800
	51 ~ 100	1,120	930
	101 ~ 300	1,290	1,070
	301이상	1,450	1,200
산업용	1세제곱미터당	810	620

[별표 4]

구경별 기본요금(제27조 및 제33조 관련)

계량기 구경별 (밀리미터)	금 액 (원)	현 행
13	890	750
20	2,490	2,110
25	4,000	3,390
32	7,110	6,040
40	12,000	10,190
50	18,390	15,630
75	44,600	37,910
100	76,050	64,640
150	165,700	140,840

[별표 7]

상수도요금 감면율(제37조 관련)

감 면 대 상	감 면 율	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	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정	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1급~3급)		
다.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	100퍼센트	
라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		
마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 사용자	50퍼센트	
바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	가정용	60퍼센트
	일반용	40퍼센트
	산업용	20퍼센트

주)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

※ 비고

1.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.
2.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. 다만,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신 규  
 상수도요금 {  해 지 } 감면 신청서  
 지하누수

신청인	주 소	거창군 읍·면			
	성 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(남/여)	
	전화번호				
수도 수전 현황	주 소	거창군 읍·면			
	수용가 번 호		업 종	구경	
감면 대상 자	성 명		생년월일		
	관 계		신청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(1~3급)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」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(인 또는 서명) (수도사용자와의 관계 : )</p> <p>거창군수 귀하</p>					
<p>※ 구비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면대상 :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, 장애인 증명서류</li> <li>- 지하누수 :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, 누수공사 사진(전·중·후)</li> </ul> <p>※ 유의사항 : 이사 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	

#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-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
-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,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

## 4. 작성자

상하수도사업소장 화 승 호



##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8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1. 08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○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변경하고, 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체납 시 가산요율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

- 하수도 사용료 31.3% 인상률 반영(안 별표 1)
-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(안 제26조, 별표 7)

#### 나. 규제 완화함

-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(안 제16조의2)
  - 요금의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신설
-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(안 제29조)
  - (현행) 체납액의 3%, 월할계산 ⇒ (변경) 2%, 일할계산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하수도법」 제65조(사용료),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6조(점용료 및 사용료)  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

####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##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#### 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(2) 규제심사 : 규제개선
- (3) 입법예고
  - (가) 예고기간 : '15. 12. 10. ~ 12. 31.
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하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6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**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법 제61조제1항”을 “법 제6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26조(감면)**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, 분뇨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29조 중 “100분의 3”을 “100분의 2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. (가산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 12개월 × 연체일수/365)

별표 1,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공공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)**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표는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                   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~ 6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</p> <p>제26조(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, 공공하수도 점용료, 분뇨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2.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3.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4.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.</p> <p>제29조(가산금)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, 공공하수도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제16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p> <p>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                     ① 법 제61조제3항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1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6조(감면)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, 분뇨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29조(가산금)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100분의 2-----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. (가산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 12개월 × 연체일수/365)</p>

[별표 1]

##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
- 하수도 사용업종은 「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」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.
-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
-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.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업종구분	사용량구분 (세제곱미터)	세제곱미터당 단가 (원)	현행
가정용	1 ~ 20	<u>160</u>	<u>101</u>
	21 ~ 30	<u>220</u>	<u>136</u>
	31 이상	<u>300</u>	<u>182</u>
일반용	1 ~ 30	<u>160</u>	<u>120</u>
	31 ~ 50	<u>200</u>	<u>153</u>
	51 ~ 100	<u>250</u>	<u>186</u>
	101 ~ 300	<u>290</u>	<u>215</u>
	301 이상	<u>350</u>	<u>265</u>
산업용	1톤당	<u>160</u>	<u>120</u>

[별표 7]

##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(제26조제1항)

감 면 대 상	감 면 율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	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1~3급)	
다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	100퍼센트
라.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「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	
마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	50퍼센트
바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하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	20퍼센트

주)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

※ 비고

○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점용료, 분뇨처리 수수료, 원인자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다.